표준계약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계약담당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의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음

구 분	내	용			
계 약 명	봉투류 연간단가 구매				
계약금액	금 원정 (₩), VAT 포함				
계약기간	2025 ~ 2026. 4. 30.	계약체결일	2025		
사용기간 (SW 사용계약)	해당없음	납품기한 (물품 구매)	2026. 4. 30		
착공일자 (시설공사)	해당없음	준공기한 (시설공사)	해당없음		
납품/설치장소	납품요청서에 의함	분할납품	가능		
계약보증금	금 원정 (₩)	납부방법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보증률	10 %	지체상금률	1,000 분의 1.5		
하자보수보증금 (시설공사 등)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해당없음		
결제계좌	예금주:				

계약서 구성: 1. 일반사항 1부

※ 계약 종류별 필수가 아닌 사항은 미기재

2. 특약사항 (일반구매) 1부

2025년 월 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대표이사 은 행 장 이 환 주 위 지배인 총무부장 (인)

일반 사항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 2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표준계약서, 일반사항, 특약사항,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중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 1 항에 규정된 특약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3조 (대금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가 완료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결제계좌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는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세부 계약금액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④ 계약담당자는 청구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동조 제 2 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제 5 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 46 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2 조에 규정된 증권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방위사업법」 제 43 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소방산업의 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폐기물관리법」 제 41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 24 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5. 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② 다만, IT 외주개발 용역 등 중요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 ③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한다.
- ④ 단가계약(단가계약이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용·용역·공급·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정수량으로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체결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회별 이행 예정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또는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예정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반환한다.
-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6 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귀속된다.
- ⑦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 7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계약담당자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⑩ 계약담당자의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업무를 계약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지체로 인하여 계약담당자가 입은 손해 일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x 계약별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 1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이행제공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 2.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의하여 착수 및 진행이 지연되었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분할납품이 가능한 계약에서 검사 및 인수를 완료한 기 납품물품의 경우(사용한 경우 포함)
-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써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계약담당자는 동조 제 1 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해산 시
 - 2.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이 신청된 경우
 - 3.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 4.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제 3 자에게 영업권이 양도될 경우
 - 5.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 ②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FAX, E-Mail 등 통지방법 포함) 30 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일방의 책임있는 원인으로 계약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 2.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③ 동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유선, FAX, E-Mail 등 선조치 후 서면 통지 방법 포함)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동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 또는 해지기준일까지 이행한 업무 또는 검사완료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대금지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 조 (부정당업자의 계약제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 6조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내규에서 정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제한 조치를 받게된다. 단, 상호간 서면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재위탁,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제공, 하도급,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비밀유지)

-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계약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 3 자(KB 금융지주는 제외한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권한 없는 제 3 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각 당사자는 귀책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 산출물 또는 정보를 계약담당자 판단 하에 공표 또는 공개하였을 경우
 - 2. 산출물 또는 정보가 공공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경우 단, 계약상대자 또는 제 3 자에 의한 정보 유출 또는 절취와 같은 불법의 사유로 인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 3. 정보공개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 4.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거나,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 또는 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단, 공개 또는 제공의 인적,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 부분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⑦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서류, 응용 프로그램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증)

- ① 본 계약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물(정보 및 라이선스 포함)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및 특허권은 모두 계약담당자에 귀속된다.
- ②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본 계약의 종료 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보관중인 모든 종류의 자료 및 물건은 계약담당자의 소유로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이를 무상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결과물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포함) 등에 대한 권리 주장, 이의 또는 소송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를 면책시키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공한 원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11 조 (손해배상 책임)

-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 3 자(금융소비자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담당자가 서비스를 일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계약 특성 상 필요시 별도 체결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서 정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 3 자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제 3 자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계약담당자의 대외 신뢰도 저하에 따른 간접적인 손해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면책)

- ①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동조 제 1 항의 경우에도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 사유가 발생한 일방 당사자는 그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양 당사자는 각 사의 종업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 13조 (개인정보보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조 (청렴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인식하며, 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①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계약담당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상기 청렴계약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감독기관 등의 정책 변화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간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간 사전협의 후 계약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변경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 16 조 (분쟁 시 조정)

-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17조 (준거법)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

제 18조 (관할법원)

- 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계약상대자가 외국사업자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특약사항 (일반구매)

제 1조 (구매 내역명세)

(단위: 개/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명	규격(모델명)	수 량	단 가	급액
합계				

제 2 조 (납품 및 검수)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격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④ 분할납품("설치"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청"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 일괄하여 검사 또는 검수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각 사용부점에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 ⑤ 납품은 검사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을 계약담당자가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제 3 조 (규격의 준수)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당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 예비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최소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 3 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위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계약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1. 검사는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검사자는 제 2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 2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⑤ 제 2 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반사항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포장)

-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과 무게 등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1. 물품조정율이 100 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 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 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나"목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 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는 제 1 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 제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등락율은 총 제조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다음 지수 등의 변동 시 계약금액조정율(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 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다. 기타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수
- ② 제 1 항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 ④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적용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 4 항의 경우 장기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당해계약의 내용·성질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단가계약)

-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기본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요청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증감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물자의 일부에 대한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경우와 이미 납품요구한 수량 중 미납품량과 당해 납품요구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추가 계약보증금은 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⑥ 계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조건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된 물품에 대하여 조제명세 및 규격서와 규격, 수량, 견본, 지질 등을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인쇄물 납품시 특약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교정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자로부터 검수받아야 하며, 최초교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의 교정완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인수를 하지 않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자 의 원고수교 및 교정 지연으로 인하여 납품지체가 예상되면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반드시 원고를 계약담당자에 반납하고 물품검사조서 여백에 원고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견본 2 부에 계약담당자로부터 교정필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교정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체에 대하여는 납품기일 3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의 확인서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